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1. 22 선고 2020가단53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1. 1. 15.

판결 선고 2021. 1. 22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. 6. 2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. 6. 28. 접수 제6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. 6. 28. 접수 제652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노승욱

별지